제243회 임 시 회
2005. 9. 6(화)11:00

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
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입니다.

□ 2005년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 **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**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
-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,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○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"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"로 하고

○ 제1조 중 "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"을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"로

○ 제7조제1항중 "1일에 80,000원"를 "1일에 110,000원"로 하고

○ 부칙으로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."는 내용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

-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위원 회기수당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

-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 및 확보대책,
-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